

코로나19 교내 출입 금지 대상자 기준 (2021.10.16.~ 시행기준)

☐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, 즉시 해당 부서 또는 해당학과 코로나 감시예방팀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내선: 학생지원팀5227, 의료지원실 5326, 감염예방실 7634).

증지 대상	증지 기간	근무형태	증빙서류	근거
1. 코로나19 확진자	① 병원 치료 : 격리가 해제되는 날 까지 ② 생활치료센터 : 퇴소 후 주소지 보건소에서 PCR검사 후 음성 확인서 * 격리해제확인서 제출한 경우 음성확인서 추가제출 요구 금지 (개정)	병가 (공인출석)	격리 해제 확인서	·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지자체용)」 ·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[교육부] 「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(제3판)」
2. 자가격리대상자 -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-보건소로부터 통보받은 경우	자가격리가 해제되는 날 까지	공가 (공인출석)	자가격리통지서	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지자체용)」
3. 자가격리대상자 동거인	동거인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날 까지 가급적 등교 또는 출근 중단 (개정)	1.부서(학과)장 보고 2.재택근무 (온라인수업 또는과제대체)	동거인의 자가격리통지서	[교육부] 「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(제3판)」
4. 코로나19 유증상자 -후각/미각소실, 발열, 감기증상, 몸살, 근육통, 두통 등	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 시 까지	재택근무 (온라인수업 또는 과제대체)	병명이 명시된 진료확인서+처방전 등	[교육부] 「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(제3판)」
5. 코로나19 검사자	① 선제검사 (본인이 원해서 받는 검사)	재택근무	①코로나19 검사	「코로나 -19 대응지침 (지자체용)」

	-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 시 까지 ② 능동(수동)감시 대상자 (개정) - 의료지원실 또는 감염예방실 문의	(온라인수업 또는 과제대체)	결과 메시지	[교육부] 「코로나-19국내 예방접종완료자관리지침 제3판」
6. 해외입국자	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(D+14) 등교중지	재택근무 또는 공가 (온라인수업 또는 과제대체)	1. 자가격리통지서 2. 능동,수동감시대 상자학교출입기준 적용	「코로나 -19 대응지침 (지자체용)」 [교육부] 「코로나-19국내 예방접종완료자관리지침 제3판」
7. 코로나19 검사자의 접촉자 등	의료지원실 문의 (051-999-5326)			코로나19 확산세 와 방역당국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

<신고처> 각 부서장 또는 학과사무실

1. 교원, 조교 : 학사지원팀 (내선번호:5238)
 2. 교직원 : 총무팀 (내선번호:5220) ex 재택근무 경우 (업무 -> 휴가신청원-> 재택근무) 관련서류제출
 3. 학생 : 학생지원팀 (내선번호: 5227) ex 공인출석관련 (신라넷-> 수업->공인출석) 관련서류제출
 4. 외국인유학생: 국제교류팀(내선번호:5514)
 5. 대학원 : 대학원교학팀(내선번호: 5587)
 6. 기숙사 : 생활관행정팀(내선번호: 6400)
- *복무관련: 부서장 협의 하에 총무팀 신고*

출처 1)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-8120(2021.9.24.)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개정안내
2)대학학사제도과-9780(2021.8.18.)대학코로나19감염예방관리안내(제3판)

능동, 수동 감시대상자 교내출입기준 변경(안)

구분	보건소 (지자체 기준)	교내 출입금지 (등교중지기준)	다중이용시설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능동감시 대상자 기준</p>	<p>•예방접종 미 완료자 -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되지 않은 자</p>	<p>•교내출입 (등교)중지기간 : 확진자 접촉일로부터 14일간</p>	<p>•(기숙사 사용 원칙) 1)확진자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귀가 조치 2)본인이 등교 강력히 희망하는 경우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능동감시 대상자 관리 (기준 미 이행 시 자가격리로 전환)</p>	<p>•자가격리 어플 설치하지 않음 •담당공무원 배정되지만 등록관리만 함 -능동감시 대상자 본인이 직접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 (임상증상 발생 시 수시로 코로나19검사 실시) •본인이 코로나19검사일마다 보건소 3회 방문 ①보건당국으로부터 연락받은 1~2일차 ②확진자 최종접촉일로부터 6~7일차 ③확진자 최종접촉일로부터 13~14일차</p>	<p>(본인이 등교를 희망할 경우) ①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실험 실습학과 학부 의 경우일체 불가 (ex치위생학과, 체육학부, 창조공연예술학부, 식품영양학과 등) ②등교중지기간 : 확진자 접촉일로부터 7일간 ③(8~14일차)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④등교 시 의료지원실 신고 - 모니터링 진행</p>	<p>가. 격리실 또는 1인실 사용 (식사제공X) -수업 외 모임, 만남, 외부활동 등 금지 나. 기숙사 담당자 모니터링 실시 •(교내 모든 식당) 11:30~13:00 이용 금지 •(교내복지시설) 14일간 이용금지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동감시 대상자 기준</p>	<p>• 예방접종 완료자</p>	<p>•교내출입 (등교)중지기간 : 확진자 최종접촉일로부터 7일간 (다음 2가지 사항을 충족시키는 자에 한함)</p>	<p>•(기숙사 사용 원칙) 확진자 접촉일로부터 7일간 귀가조치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동감시 대상자 관리 (기준 미 이행 시 자가격리로 전환)</p>	<p>•대상자 본인이 본인건강 모니터링 실시 •본인이 코로나19검사일마다 보건소 4회 방문 ①보건당국으로부터 연락받은 1~2일차 ②확진자 최종접촉일로부터 3일차 ③확진자 최종접촉일로부터 6~7일차 ④확진자 최종접촉일로부터 13~14일차</p>	<p>①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실험 실습학과 학부의 경우일체 불가 (ex 치위생학과, 체육학부, 창조공연예술학부, 식품영양학과 등) ②확진자 접촉일로부터 6~7일차에 실시한 코로나 19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③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④등교 시 의료지원실 신고 - 모니터링 진행</p>	<p>•(교내 모든 식당) 11:30~13:00 이용 금지 •(교내복지시설) 14일간 이용금지</p>